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60
----------	------

발의년월일 : 2020. 4. .
발 의 자 : 홍인표 의원
강성환 의원
김규학 의원
김동식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배지숙 의원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전화, 방문예약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사전예약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 우선 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대절차에 농기계 임차에 대한 사전예약 방식 다양화(안 제6조)
- 나. 임대기준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
2.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대기준)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임대한다. 다만,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여성농업인

라. 65세 이상인 농업인

2.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한다.

3.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로

하고,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 입고 및 출고 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별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를 준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	임차자		
대구광역시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주민번호	□□□□□□-□□□□□□□□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대
부속작업기		수량	대
		수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금 원()		
농기계 사용 계획			
기계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구 동 번지(속칭)		
작업면적	m ² (일 ha)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3.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자가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해당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4.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자가 배상한다.
5.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7.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자 : 대구광역시 (인)

임차자 :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임대절차) ① 시장은 사용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p>	<p>제6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기계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 2.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p>제7조(임대기준) ① 농기계는 신청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 <p>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7조(임대기준)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임대한다. 다만,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여성농업인 라. 65세 이상인 농업인

2.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한다.

3.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로 하고, 신청 대기
자가 없는 경우 기간을 한 차
레만 연장할 수 있다.

4. 입고 및 출고 시간은 정규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하고, 농번기 등 필요
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
다.

관 계 법 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

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 15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